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

의안 번호	(491)
----------	-------

제출년월일 : 2011년 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2.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도시환경시설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공공디자인 시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디자인 공모를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 제천시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공공디자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3. 의안전문 : 볼 임

4. 기타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2. 08 ~ 12. 28(20일간)
- 다. 2011년도 제 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5. 관계법령 : 볼 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미관을 위해 제작, 설치, 조성, 운영되는 시설, 용품, 공간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결과물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3. “도시환경시설물”이란 별표1과 별표2에서 말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시미관”이란 자연환경과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시설물 등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적,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도시환경시설물 등의 미관향상을 위한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 제작,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사용자를 배려하는 소통과 통합의 디자인 적용
4.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제4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천시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
3.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의 통합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색채·조명계획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외협력의 증진)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정책·사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시책 추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 및 시민제안사업
 2.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을 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
 3.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자문·용역
-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환경시설물을 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의 심의
 3. 별표2에서 정하는 도시환경시설물을 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의 자문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업
- ② 별표1에 해당하는 디자인심의 대상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실행 이전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
 - ③ 별표2에 해당하는 디자인자문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사업실행 이전에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심의·자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현장사진
2. 기본도면 : 배지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3. 기타 색채·재료 계획 등 디자인심의·자문에 필요한 정보

제8조(디자인심의의 예외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자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안전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통합매뉴얼의 디자인예시안을 반영(형태, 색채, 재질 등)하여 설치·제작하는 별표1의 도시환경시설물
2. 별표1의 도시환경시설물을 제작·설치·변경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도시미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긴급을 요하는 안전시설이나 재해복구시설
3.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별표1의 도시환경시설물
4. 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5. 공개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별표1과 별표2의 도시환경시설물
6.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디자인 전문업체의 용역수행을 통해 디자인을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제천시 공공디자인 관련공무원

3. 건축·토목·조경·환경·미술·색채·광고·시각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건축문화분과위원회

2. 조형경관분과위원회

3. 미술색채분과위원회

4. 운영교육분과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디자인심의 결과반영) 위원장은 디자인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자문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사진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위원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유학·이민·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디자인심의·자문 등 공공디자인 시책에 4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디자인심의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기밀 등을 누설·악용한 경우
5. 그 밖에 디자인심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강좌 운영
 2.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② 시장은 디자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디자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시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
 2. 기타 디자인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시민단체
- ③ 디자인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디자인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디자인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지원)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시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
2.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디자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② 시장은 디자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환경시설물의 디자인심의대상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 읍·면·동사무소 나. 도서관 다. 공중화장실 라. 주차전용건축물	
공용건축물	가. 마을회관, 경로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문화관광 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관광안내표지판	
교통관련 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시내·시외버스 승차대 다. 자전거보관대(공중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라. 공용주차장 관리소 마. 교통 감시시설	
가로녹지 시설	가. 휴지통, 음수대, 분수대, 파고라, 벤치 나.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다. 공원, 유원지에 설치하는 사인(홍보·안내문) 시스템	
도로첨용 허가대상 시설물	가. 공공게시대 및 계시판 나. 가로 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다. 광고탑, 홍보탑 라. 정보지함	

3.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도로 다. 지하차도, 입체교각, 지하도의 지상부, 광장 라. 도로(변)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폭 15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라. 중앙분리대, 훈스, 블라드, 맨홀뚜껑, 보도블럭, 경계석 마. 가로등(배전함 포함)	

<별표 2>

도시환경시설물의 디자인자문대상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기타	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지상변압기, 무선전화기지국, 유선방송용 단자함 다. 공중전화부스 라.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의 공사가림막 마. 산불감시초소 바. 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표시물, 캐릭터, 상징물 사. 시에서 보조 또는 발주하여 설치하는 조형물 아. 제천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의 각종 포장물 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설치사업	

<별지 제1호 서식>

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신청기관(부서)		
사업 개요	소재지	
	규모	
	용도	
	사업비	천원
	신청내역	
설계 자	주소	
	상호	
	대표자	
신청자 또는 설계자 의견(설계의도 등)		
<p style="margin-top: 10px;">위와 같이 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자 :		기관(부서)장
제천시장 귀하		
<p style="margin-top: 10px;">※첨부서류(PPT형식을 원칙으로함) : 1.위치도 2.사진(근·원) 3.설계도(색채.재료계획)</p>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10 - 1296호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08.

제 천 시 장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아름답고 체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3.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도시환경시설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함
- 공공디자인 시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디자인 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 추진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범위
 - 디자인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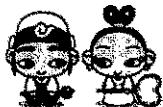
-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별표1) 및 예외적용의 범위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위·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 제천시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 공공디자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지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단체의 범위와 근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28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도시디자인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1, FAX 641 - 5259 담당자 : 최승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문서번호	건축디자인과-3 9837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10. 12. 30.

공개

★실무관	도시디자인 팀장	건축디자인 과장	미래경영본 부장		
최승만	김재호	문영주	12/30 대결 김태원		
협 조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미래경영본부
건축디자인과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I. 개요

- 조례명 :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10. 12. 08. ~ 2010. 12. 28.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 조례제정목적 :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II.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도시환경시설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공공디자인 시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디자인 공모를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 제천시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공공디자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기존 ‘제천시 건축조례’ 하위의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으로 운영되었던 디자인심의제도를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III. 입법예고 결과

○ 도 관련부서 담당자 의견내용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노경철)

- 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밑줄친 부분의 해석에 있어, 자문이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 자문과 심의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환경시설물을 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의·자문 대상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실행 이전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
- ③ 디자인심의·자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현장사진
 2. 기본도면 : 배지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3. 기타 색채·재료 계획 등 디자인심의·자문에 필요한 정보

▣ 담당자 의견 : 자문은 강제할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디자인 자문제도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 담당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향후 계획

○ 조례안 수정

- 조례안 제7조에서 심의와 자문에 대한 조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 기존 별표1에서 “4.기타(자문대상)”을 삭제하고 “별표2”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디자인 심의대상과 디자인 자문대상을 구분(붙임참조)

<조례안 제7조 수정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환경시설물을 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의 심의
 3. 별표2에서 정하는 도시환경시설물을 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의 자문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업
- ② 별표1에 해당하는 디자인심의 대상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실행 이전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
- ③ 별표2에 해당하는 디자인자문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사업실행 이전에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심의·자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현장사진
 2.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3. 기타 색채·재료 계획 등 디자인심의·자문에 필요한 정보

-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 2011. 01월
- 제천시의회 의안 제출 ----- 2011. 01월

붙임 1.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당초) 1부.
2.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수정안 1부. 끝.